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료윤리 교과과정 개선 방안

손 영 수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산부인과학교실

A plan for improving the curriculum of medical ethics of Medical School in Jeju National University

Young-Soo Son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eju, Korea

Abstract

For the moment, the curriculum of medical ethics and medical jurisprudence of medical college in Jeju National University is having been somewhat appropriately constituted and have a right future direction through several times of mediation that have happened for a relatively short time. However, as of April, 2009, the total lecture hours which is allocated for the subject of 'Patient-Doctor-Society III'(medical ethics and medical jurisprudence in byname) are 15 hours. That would fall short of the need which is necessary for obtaining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the subject. Judging from the subject matter, the subject of medical jurisprudence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medical law which deals with individual medical law and regulation in force. So, therefore, the subject matters of medical contract, medical accident, malpractice, and medical litigation are to include in the subject of medical jurisprudence. In order to get to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the subject, medical ethics and medical jurisprudence, the followings would be necessary. First, understanding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medical ethics and medical jurisprudence in medical education by the faculty of medical college or medical school. Second, earnest effort to cultivate men of ability for professional education in various dimensions of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y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or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Third, open-mindedness and communicative understanding among the men of ability for professional education to participate in the field of educating medical ethics and medical jurisprudence. The first step of practical and concrete alternative proposal for obtaining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the subject, medical ethics and medical jurisprudence, is to establish a department which would have the whole responsibilty for operating the subject, for example, 'Department of Medical Ethics and Medical Jurisprudence' and administer the interdisciplinary or multidisciplinary courses of research and academic degree. (J Med Life Sci 2009;6:7-11)

Key Words : medical ethics, medical school

서 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 나름의 존재이유가 있고,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오늘날 인간의 생명과 그 존재의 존엄성은 특별하게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인간에 대해서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이 부여되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고대의 전제군주국가에서는 특정의 인물이나 특정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그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보편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이 지구상의 다른 어떤 생명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의학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그 고유의 대상으로 하여 발달해 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에서보다 더 윤리적인 면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핵심 동인으로 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급속한 발전은 의학이 전승 · 유지해 온 전

Address for correspondence : Young-Soo Son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66 Jejudaehakno, 690-756, Jeju, Korea
E-mail : art3255@hanmail.net

통적인 생명관과 인간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에 따라 훌륭한 자연과학자의 능력과 역할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적인 자격요건이 되었다. 심지어는, 그러한 자연과학적인 능력은 의학분야에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충분조건으로 받아 들여 지기도 하였다.

의학분야에서의 그와 같은 사고는, 인간의 생명을 기술적 의료의 단순대상으로 격화해 버림으로써, 의학의 목적과 수단은 그 주객이 전도되고, 인간의 인격적 존엄성은 소외되어 버리는 근본적인 부작용과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오늘날의 의료환경은 의사들에게 자연과학적 지식을 갖추는 것은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수용적이며, 의료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와 특별한 윤리의식을 함께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사회의 요구는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의학분야의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등한시해 왔던 의학본래의 소명을 다시 찾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자세와 자질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윤리교육의 변천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료윤리 교과과정의 수행 및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그를 통하여 향후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료윤리 교과과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의료윤리 교육의 변천

우리나라의 현대적 의학교육은 구한말부터 시작되어 한 세기를 넘겨 발전을 지속해 오고 있다. 현대 의학교육이 서양의학의 자연과학적 및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은 대내적 및 대외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뒷 방 손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간혹 의료윤리를 강조하는 언급이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마치 의학의 발전을 질시하거나, 현대적 감각이 무딘 고루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수였다.

의학은 인간의 건강의 증진과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복무하는 학문의 영역이다. 그리고, 의료윤리학은 의학과 의료 및 의생명과학의 학문적·사회적 실천과 관련하여, 환자-의사 관계 및 소통의 문제, 의사의 전문적 직업윤리, 및 의료와 의생명과학의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윤리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의학내의 한 분야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윤리는 그러한 중요한 내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들어 와서야 일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정규 교과목으로 편입되었고, 1990년 이후에는 여러 의과대학에서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외 전시용 혹은 대학평가 대비용으로서 부끄러운 수준을 크게 넘어 서지 못하고 있었다[1].

의료전문직을 수행하는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의학협회(1995년 5월 26일, 협회의 명칭을 "대한의사협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하 '의협'이라고 약함)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 와서야 의료윤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의협의 1993년 3월 4일 '뇌사에 관한 선언'과 1993년 5월 6일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을 들 수 있다.

뇌사의 정의와 관련하여 고전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는, 미국 Harvard 의대의 뇌사판단기준이 발표된 것은 1968년이었고, 그 해 8월 9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 22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시드니 선언"을 통해 뇌사의 판단기준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이 기준을 모안으로 하여 나라마다 기준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다. 이에 더하여, 미국 정부는 1981년 7월 Harvard 기준의 난점을 해결하고 사망에 관한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의학자문위원회를 두고 보다 세밀한 사망판단의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도 별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뇌사 관련 주관심 단체인 의협도 장기이식수술과 관련하여 형법상 살인죄의 적용 여부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후인 1993년에 와서야비로서 뇌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촉진 선도하려는 목적으로 '뇌사에 관한 선언'을 하고 있다.

인공수태에 관하여는 더욱 더 사후약방문 격의 성격이 강하다. 인공수태의 한 방법인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 오랫동안 아무런 윤리적 및 법적 규제 없이 단순한 의료시술로서 시행되어 왔었다. 그러던 중 1993년 1월, 경희대 의대에서시술한 '비배우자 인공수정' 시술의 위법성 및 비윤리성의 문제가 언론에 집중 보도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난 후인, 1993년 2월 15일에야 비로서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의 시행지침'의 시행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의협에서는 1993년 5월 '인공수태에 관한 윤리선언'을 공포하였고,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인공수태술 윤리지침'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3].

위의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료전문직을 수행하는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의료윤리를 선도적으로 강조하고 교육하려고 노력하였다기 보다는, 국내에서 의료윤리 관련 사안이 메스컴 등을 통해 터져 나오거나,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거나, 혹은 국제적으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나서야 소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용으로 각종 윤리 선언 및 윤리 강령 등을 발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교육과정의 변천

1.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환경의 변천

1998년 3월 1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신설되어 의학과 1학년에 36명이 입학하였다. 신설 의과대학으로서 의학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크게 부족하였던 관계로, 대부분의 신설 지방 국립 의과대학이 그러 하였던 것처럼 국립 서울대학의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초대 학장으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장가용교수님이 취임하셨고, 대부분의 의학교육 관련 교과과정에서 서울의대의 그것이 적용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의료윤리교육의 사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주의료원 등에서의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이 불가능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서울특

별시립 보라매병원에서의 임상실습교육을 위탁하는 협약을 1999년 4월 6일 체결하였다. 2001년 2월 26일에는 의과대학운영규정이 제정·공포되었고, 2001년 8월 28일에는 의학과에 교실을 설치하는 제주대학교 학칙 개정이 있어, 기초의학분야에 10교실, 임상의학분야에 21교실이 설치되었다. 2001년 11월 1일에는 제주대학교병원이 개원하였으나,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은 여전히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에 위탁하고 있었다. 2002년 3월 1일에는 대학원 의학과에 석사과정이 개설되었고, 2004년 3월 1일에는 대학원 의학과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2004년 8월 12일에는 의학과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공포하였고, 투철한 사명의식, 윤리의식, 전문성 및 높은 소양과 충실한 진료 능력을 갖춘 일차 진료의의 양성이라는 의과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1일에는 종래 별도로 구성·진행해 오던 기초의학교과목과 임상의학교과목을 계통적으로 재구성한 통합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통합교육과정의 원만한 추진과 새로운 의학교육 방법론의 도입 및 개발을 위하여 2005년 7월 1일 의학교육실이 설치되었다. 2005년 6월 21일,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2008년 3월 1일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첫 신입생 40명이 입학하였다.

2. 의료윤리 교과목 편성

통합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이전의 의학과의 교과과정에서는, 2학년 2학기에 '의학윤리학Ⅰ'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었고, 4학년 2학기에 '의사법규'와 '의학윤리학Ⅱ'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었다. '의학윤리학Ⅰ' 교과목은 윤리 및 윤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개론적인 강의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로 철학 또는 윤리학 분야를 전공한 외부 교수에 의해 진행되었고, '의학윤리학Ⅱ' 교과목은 보다 더 의료윤리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의과대학의 교수들에 의해 강의가 진행되었다. '의학윤리학Ⅰ' 교과목은 2005년도에 통합교과과정이 도입될 때까지 큰 변화없이 진행되었다. 반면, '의학윤리학Ⅱ' 교과목은 각론적 세부 주제 면에서, 비록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변모를 추구해 왔다. 1998년 3월 1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된 이래, 2001년도에 처음 졸업반인 4학년에게 2학기 교과목으로 '의학윤리학Ⅱ'가 설강되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의학윤리학Ⅱ' 교과목의 각론적 세부 주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았다.

(1) 의료윤리의 기본원칙, 의료윤리 배경철학
(2) 의사의 치료권고에 반한 퇴원
(3) 출생과 관련된 윤리문제
(4) 사망과 관련된 윤리문제
(5) 의학연구와 관련된 윤리문제
(6) 의료에서의 여러 관계
(7) 의사의 법적 책임

2003년도 '의학윤리학Ⅱ' 교과목의 각론적 세부 주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았다.

(1) 의료윤리 교육현황
(2) 의사의 윤리적 딜레마
(3) 의학연구와 관련된 윤리문제
(4) 사망과 관련된 윤리문제
(5) 의료에서의 여러 관계
(6) 윤리학
(7) 생명의료윤리의 원리와 영역
(8) 생명의료윤리의 역사
(9) 출생과 관련된 윤리문제
(10) 의사의 법적 책임

2004년도 '의학윤리학Ⅱ' 교과목의 각론적 세부 주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았다.

(1) 의료윤리 교육현황
(2) 의사의 윤리적 딜레마
(3) 의학연구와 관련된 윤리문제
(4) 사망과 관련된 윤리문제
(5) 의료에서의 여러 관계
(6) 윤리학
(7) 생명의료윤리의 원리와 영역
(8) 출생과 관련된 윤리문제

2005년도 1학기부터 통합교육과정이 도입되었지만, 의료윤리와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었다. 즉, 2학년 2학기에 '의학윤리학Ⅰ', 4학년 2학기에 '의학윤리학Ⅱ' 및 '의사법규'의 교과목이 그 형식과 내용면에 있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2006년도에는 통합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학윤리학Ⅰ' 교과목은 폐지되었으나, '의학윤리학Ⅱ' 교과목의 내용면에서의 확대보충이나 강화는 전혀 없었으며, 이전년도의 '의학윤리학Ⅱ' 교과목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2007년도에는 '의학윤리학Ⅱ' 교과목의 내용을 다소 수정 및 보완하였다. 4학년 2학기에 편성되어 있었던 '의학윤리학Ⅱ' 교과목에서의 각론적 세부주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강의 소개 및 의료윤리 교육현황
(2)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윤리문제
(3) 의료에서의 여러 관계
(4) 생명의료윤리의 원리와 영역
(5) 인간생체 실험
(6) 의사의 윤리적 딜레마
(7) 황우석 사태의 의학윤리적 평가
(8) 사망과 관련된 윤리문제

2008년도의 통합교과과정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수정 및 보완되어 진행되었는데, 4학년 2학기에 편성되어 있었던 '환자·의사·사회Ⅱ'속에 '의료윤리'와 '의료법규'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의료윤리' 교과목의 세부주제 면에서도 다소의 조정과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의료사고와 의료과오'에 대해서는 '의료

윤리'와는 별도로 '환자 · 의사 · 사회Ⅱ' 내의 또 다른 영역의 세부주제로서 법의학교실에서 강의를 담당하였다.

(1) 생명윤리와 법
(2) 의료윤리 교육현황
(3) 생명의 탄생과 윤리문제
(4) 사망과 윤리문제
(5) 연구와 의학윤리(황우석 사태의 의학윤리적 평가)

2008년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의학교육실이 중심이 되어, 그동안 '환자 · 의사 · 사회' 관련 교과목에서 강의를 담당하였거나, 협좌교수로서 역할을 하였던 교수들이 모여, '환자 · 의사 · 사회' 교과목의 전반적인 통합 · 조정 및 보완을 기획하였다. 그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의학개론', '환자 · 의사 · 사회Ⅰ', 및 '환자 · 의사 · 사회Ⅱ' 등 세 교과목을 통합하고, 세부 강의 주제들을 재조정하여 '환자 · 의사 · 사회Ⅰ', '환자 · 의사 · 사회Ⅱ', '환자 · 의사 · 사회Ⅲ' 및 '환자 · 의사 · 사회Ⅳ'로 다시금 구성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환자 · 의사 · 사회Ⅲ' 교과목은 별칭 '의료윤리 및 의료법리'라고 이름지었고, 2009년 1학기부터 시행되었다. '의료윤리 및 의료법리' 교과목의 세부 강의주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강의소개
(2) 의료윤리와 법규범
(3) 의료윤리의 원리
(4) 의사의 설명의무
(5) 진료기록과 환자의 프라이버시
(6) 생명의 탄생과 의료윤리
(7) 사망과 의료윤리
(8) 의료윤리 사례연구(황우석사태 평석)
(9) 의료법리 사례연구(설명의무 · 자기결정권 평석)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료윤리 교과과정의 개선 방안

의학은 사람을 그 고유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한 사람이 지니는 다른 사람과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인격의 유일성으로 인하여 다른 생명과학분야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견지해 오고 있다. 서양과 동양의 의학이 그 역사와 배경철학에 있어서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4], 오늘날 의학을 단순한 자연과학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인문사회의학', '환자 · 의사 · 사회', '의료전문직의professionalism' 등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강조되고 있다.

현재 제주대학교의 '환자 · 의사 · 사회Ⅲ' 과목은 의료윤리 및 의료법리와 관련된 세부주제를 부분적으로 다루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의료윤리학 및 의료법리학에 대한 총론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료윤리학의 총론적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의학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적 및 인문 · 사회과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학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이해와 함께, 문학, 논리학, 심리학, 윤리학 및 철학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이해를 수강전에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편, 의료법리학은 의학과 의료에 관한 올바른 사회적 · 법적 평가 및 비평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분야로서, 의료법리학에 대한 총론적 이해를 위해서는 법학, 사회학, 정치학 등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이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연구보고서인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5]에서는,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을 1)인간과 고통의 본질에 대한 이해 2)윤리와 의료윤리의 이해 3)자신에 대한 분석과 개발 4)의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 5)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지 6)의사의 직업 전문성 함양 등의 여섯 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윤리와 의료윤리의 이해 중에서, '2-2.의료윤리에 대한 이해'에는 다음과 같은 학습목표를 두고 있다.

(1) 의료윤리의 역사적 기초와 네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필수)
(2)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 문제의 주요 쟁점과 준거를 설명할 수 있다.(안락사, 장기이식, 출생 및 배아복제, 낙태 등).(필수)
(3) 윤리적 지침에 따라 생명유지 장치의 유지, 중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필수)
(4) 의학연구와 관련된 연구윤리(헬싱키선언, IRB 등)의 핵심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필수)
(5)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주요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필수)
(6) 의료광고와 소비자의 알 권리에 관해 알아 본다.(필수)
(7) 환자의 이익과 병원이나 전문단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필수)
(8) 의료윤리와 관련된 단체 및 위원회의 현황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권장)

그러나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만든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의 여섯 영역에는 의료법리와 관계되는 언급이나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의료윤리를 의사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나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규제에만 의존하여 담보하기에는 의 · 생명과학이 너무나 복잡하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의 · 생명과학의 연구와 기술 개발에는 세계적인 치열한 경쟁과 수많은 이권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료윤리를 전통적인 윤리의 범주에 한정해 놓을 수는 없게 되었다. 그와 같은 범주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황우석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를 절실히 느낀 바 있다.

또한, 의학과 의료의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성장함에 따라, 이전에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느껴 왔던 의학과 의료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사회적 및 법적 평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따라서 의학과 의료에 관한 올바른 사회적 · 법적 평가 및 비평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분야인 의료법리학 분야는 의료윤리학 분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의학교육의 장에서 강조되게 되었다.

2009년 4월 현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자 · 의사 · 사회Ⅲ' 과목에 배정된 시간은 총 15시간으로서, 의료법리학적 이해는 차치하고라도,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권고하는 수준의 의료윤리에 대한 이해만을 달성하기에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권고하는 수준의 의료윤리에 대한 이해와 목적하는 수준의 의료법리에 대한 총론적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구성원들의 의료윤리 및 의료법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이해의 증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둘째, 국가적 또는 지역적 혹은 대학본부 차원에서 학제적 협력을 통하여 의료윤리학 및 의료법리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셋째, 그러한 전문인력들이 의료윤리 및 의료법리의 교육과정의 마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제적 열린 마음과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료윤리 및 의료법리'의 교과과정은,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몇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전문성에 맞게 방향 설정을 잘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과과정의 내용 면에서 볼 때, '의료법리학'은 개별적인 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하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의 해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규' 과목과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진료계약, 의료사고, 의료과오 및 의료소송 등에 관련한 문제는 '의료법리학'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의 의료 환경이나 의학교육 환경을 감안해 볼 때, 의사, 의학교육자 혹은 의과대학 및 의사단체가 의료윤리 및 의료법리의 교육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한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현실적 · 학문적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

의료윤리 및 의료법리의 교육목표를 향한 현실적 구체적 실행방안의 첫 걸음으로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전담교실(예를 들어, '의료윤리학 및 의료법리학교실')을 설치하여 교육과 학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외적 신뢰도를 얻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제적 연구과정과 학위과정을 함께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요 약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료윤리 및 의료법리'의 교과과정은,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몇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전문성에 맞게 방향 설정을 잘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9년 4월 현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자 · 의사 · 사회Ⅲ' 과목에 배정된 시간은 총 15시간으로서, 의료법리학적 이해는 차치하고라도,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권고하는 수준의 의료윤리에 대한 이해 만을 달성하기에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과과정의 내용 면에서 볼 때, 의료법리학은 개별적인 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하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의 해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규' 과목과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진료계약, 의료사고, 의료과오 및 의료소송 등에 관련한 문제는 의료법리학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권고하는 수준의 의료윤리에 대한 이해와 목적하는 수준의 의료법리에 대한 총론적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구성원들의 의료윤리 및 의료법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이해의 증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둘째, 국가적 또는 지역적 혹은 대학본부 차원에서 학제적 혹은 다학문간 협력을 통하여 의료윤리학 및 의료법리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셋째, 그러한 전문인력들이 의료윤리 및 의료법리의 교육과정의 마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제적 열린 마음과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윤리 및 의료법리의 교육목표를 향한 현실적 구체적 실행방안의 첫 걸음으로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전담교실(예를 들어, '의료윤리학 및 의료법리학교실')을 설치하여 교육과 학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외적 신뢰도를 얻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제적 혹은 다학문적 연구과정과 학위과정을 함께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박상형, 고윤석.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의료윤리 교육에 관한 경험 및 인식도 조사. 대한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7:10:109.
2) 김향미, 손영수. 의 · 생명과학의 법 · 윤리적 이해. 제주:제주대학교출판부, 2006:133-6.
3)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60년사. 서울:대한산부인과학회, 2008:81.
4) 강신익. 의의 역사와 문화-의사, 의술, 의학-. 가톨릭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연구소 개소 기념 인문사회의학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2008:55-61.
5)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 2007:15-9.